



## 닭 전염성후두기관지염 발생예보 —농촌진흥청 11월 3일—

농촌진흥청은 11월 3일 닭 전염성후두기관지염 및 돼지 전염성위장염, 로타바이러스 발생예보를 발령했다.

### ○닭 전염성후두기관지염 예보

저온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항상 호흡기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다. 특히 닭의 전염성 후두기관지염은 늦가을에 시작하여 계사내의 환기상태가 나쁜 겨울철에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

89년도의 전염성 후두기관지염 예방약 사용량을 보면 88년에 비해 10%정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과 겹쳐 이 질병의 만연이 우려되므로 양계농가에서는 닭 뉴캐슬병과 함께 닭 전염성 후두기관지염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를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 1. 주요증상

○눈이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결막염 증세를 나타내고 콧물을 흘리며 기침과 재채기를 하고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낸다.

○기침할 때 기관내에 있던 혈담이 튀어나와 케이지 등에 걸려있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산란율이 떨어지며 떨어진 산란율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1개월 정도 소요되어 경제적 손실이 많다.

○호흡이 곤란해져 숨쉴때 목을 쭉쭉 뽑으면서 입을 벌리는 개구호흡을 하게 된다.

### 2. 예방대책

#### 가. 예방

○예방약을 정확하게 눈에 한방울씩 떨어뜨린다.

(점안접종)

○전염성 후두기관지염 예방접종 프로그램

구 분	접 종 시 기		
	1차	2차	3차
발생상제지	2~3주령	4~6주령	12~16주령
발생위험지역	-	4~6주령	12~16주령

○2~3주령 때의 예방접종은 4주령전의 병아리에 전염병 후두기관지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제지에 한한다.

○뉴캐슬병과 전염성 후두기관염의 생독백신은 반드시 10일 이상의 접종간격을 두어야 한다.

○예방접종만으로 100%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예방접종을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 나. 위생적 관리요령

○모든 양계장에서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독후 출입시켜야 한다.

○여러 일령의 계군을 한 계사에 혼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닭은 1년이상 보균계로 남아 다른 건강한 닭에 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동시입추, 동시출하의 사양관리 방식을 택한다.

### 3. 병 발생시 긴급조치

○전염성 후두기관지염은 1종 법정전염병이므로

이 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병원체가 다른 계사나 다른 양계장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계는 땅속 깊이 묻거나 불에 태워 없애야 한다.

○병계사에서 사용하던 양계기구는 철저히 소독하고 병계사의 관리인이 병이 없는 건강한 계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농축산물시장 8년내에 완전개방

— GATT 협정 18조 B항 졸업—

우리나라는 금년말로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8조 B항에서 졸업하게 되어 농축산물을 비롯한 수입제한품목의 수입규제를 더이상 못하게 되었다.

97년 6월말까지 8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있다지만 완전개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4월에 91년까지 3년간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243개 품목을 발표하고 남은 농축산물 269개 품목을 비롯한 279개 품목이 수입제한 품목이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국회상정

— 자조금 적립 지원—

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안, 농어촌공사설립 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했다.

농어촌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법안의 주요골자는 △농업관측결과에 따라 자율적 생산조절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자조금 적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농지의 이용과 전용규제를 완화한다.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고자 할 때는 수입예시계획을 예시하도록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등이다.

### 축산폐수배출 규제기간 연장 검토

— 사전홍보로 피해농가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부는 최근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와 관련된 단속결과 구속 또는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와 관련, 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농가에 대한 관계부처의 단속결과 많은 농가가 해당법에 저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적 규제대상농가에 대한 지도단속 기간을 향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을 연장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일선(환경) 행정기관의 홍보강화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기준의 실용성(규격화 및 표준화)을 제고하며, 현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중 축산시설에서 우사의 두당 소요면적을 두당 12㎡에서 7㎡로 관련법규를 조정하려고 있다.

### 가축체내 잔류동물약품 사용규제키로

— 동물약품 사용기준 약사법에 명문화—

보건사회부는 항생제, 항균제, 성장촉진제 등 육류를 비롯한 동물성 식품내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미치는 동물약품에 대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동물약품사용기준을 약사법 개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던 잔류동물약품 사용기준을 닭고기 양식어류 등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육류체내에 잔류하여 인체에 유해한 항생제, 항균제, 성장촉진제 등 특정 동물약품을 지정하여 이를 사용하는 대상동물과 용법, 용량, 사용금지기간 등을 규정하여 양축가, 양식업자, 배합사료공장 등에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양축가들이 수의사 처방없이 유해 동물약품을 과다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단계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규제를 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축사용 비닐하우스 건축허가 대상

—건축사의 설계가 있어야—

건축허가 대상에 축사용 비닐하우스가 포함되는가의 질의에 대해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설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건설부의 회신 내용은 △축사용 비닐하우스는 건축법 2조의 2항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되므로 건축법 5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사법 제4조 1항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 한국콩연구회 연구발표회 개최 예정

—11월 17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한국콩연구회(회장 이춘녕)은 오는 11월 17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농업기술진흥관에서 89년도 가을 정기총회 및 제12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할 내용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남형 박사의 「혈액을 코팅한 대두박의 사료적 가치」, 고려대학교 지규만 박사의 「대두피의 사료적 가치」, 미국 대두협회 황광연 실장의 「전지대두의 이용성」, 중앙대학교 백인기 박사의 「식물성 단백질원의 항영양인자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서울대 농대 관악캠퍼스로 이전

—94년까지 연차적으로—

서울대학교는 수원 캠퍼스에 있는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을 오는 94년까지 연차적으로 서울 관악 캠퍼스로 옮기기로 했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수원캠퍼스 부지를 매각해 충당할 예정이며 목장, 수목원, 연습림 등 현장실습 시설은 남겨두기로 했다.

### 채란계사의 설계 및 환기시설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 일시 : 1989년 11월 16일(목) 12:00
- 장소 : 축산회관 대회의실(지하)
- 참가회비 : 10,000원

#### 일 정

- 12:00—12:50 등록
- 12:50—13:00 회장인사
- 13:00—15:00 채란계사의 설계  
발표자 : 김영환(광천농장)
- 15:00—17:00 계사 환기시설의 개선  
발표자 : 김기경(고창양계)

○주최 : 한국가금학회  
대한양계협회

### '89 2/4분기 배합사료 위배검사 내역

—천광산업, 영남제분 산란초기사료 위배—

농림수산부가 배합사료 품질관리와 양축가로 하여금 양질의 배합사료를 선택하는데 활용하도록 실시하고 있는 '89 2/4분기 배합사료 검사결과를 집계 발표하였다.

2/4분기 사료검사에서는 총 13건이 위배되었다. 이중 양계사료는 2건으로 천광산업은 산란초기사료의 칼슘부족, 영남제분은 산란초기사료의 조단백부족으로 과징금 82만5천원과 150만원이 부과되었다.